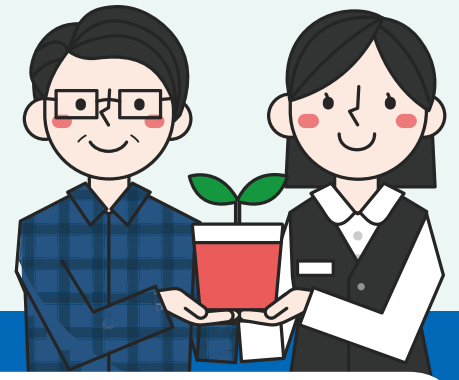


사업주를 위한 '고용 장려금' 제도 (2019)



1. 고용창출 지원

유형	지원 내용
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필요 (승인사업장에 대한 지원)	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• 교대제 개편, 실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<증가근로자수 1인당> ▶ (인건비)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80만원,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최대 40만원 ▶ (임금감소액 보전) 임금감소 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<기업당> ▶ (설비투자비 용자) 최대 50억원
	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• 근무체계 개편,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<신규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> ▶ (인건비) 기업규모 관계없이 월 최대 60만원 ▶ (간접노무비) 우선지원대상기업 · 중견기업 월 10만원
	국내 복귀기업 지원 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 (제조업)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<증가근로자수 1인당> ▶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60만원, 중견기업 월 최대 30만원
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	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•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*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* 신중년 적합직무 직종을 별도 공고 <신규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> ▶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80만원, 중견기업 월 최대 40만원
	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(요건심사형) • 근로기준법 개정(법률 15513호)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<증가한 근로자 1인당> ▶ (인건비)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*, 1~3년 지원 *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▶ (임금감소액 보전) 월 최대 40만원, 1~3년 지원 *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(노선서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)
	고용촉진 장려금 •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<신규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> ▶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최대 30만원
청년 추가 고용지원	• 기업규모*에 따라 청년(만15~34세)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 (* 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) * 30인 미만 청년 1명 이상, 30~99인 청년 2명 이상, 100인 이상 청년 3명 이상 채용 <신규고용한 청년 1인당> ▶ (인건비) 월 최대 75만원(연 최대 900만원)을 3년간 지원 * 기업 전체근로자수 증가범위내 지원, 사업장의 청년 최초지원일로부터 3년간 지원

2. 고용안정 지원

유형		지원 내용								
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필요 (승인사업장에 대한 지원)	정규직 전환 지원	•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<전환된 근로자 1인당> ▶ (임금증가 보전금) 월 최대 60만원 ▶ (간접노무비) 월 30만원								
	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	•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원격근무제, 재택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<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> ▶ (간접노무비) 1주당 5~10만원 ※ 주2일이하 5만원, 주3일이상 10만원 지원 ▶ (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) 시스템 구축비의 1/2 이내, 2,000만원 한도(기업당)								
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	시간선택제 전환 지원	•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<전환된 근로자 1인당> ▶ (임금감소 보전금) 월 최대 40만원 ▶ (대체인력 인건비)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최대 30만원 ▶ (간접노무비)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20만원								
	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	• (육아휴직 등 부여)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• (대체인력지원) 출산전후(유산,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<해당근로자 1인당> ▶ (대체인력 인건비)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최대 60만원(인수인계기간 월 최대 120만원), 대규모기업 월 최대 30만원 ▶ (육아휴직 등 부여 간접노무비) <table><tr><td>비고</td><td>육아기 근로시간단축</td><td>육아휴직</td></tr><tr><td>우선지원 대상기업</td><td>월 30만원</td><td>월 30만원</td></tr><tr><td>대규모기업</td><td>월 10만원</td><td>미지급</td></tr></table> ※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 지원(1호 인센티브)	비고	육아기 근로시간단축	육아휴직	우선지원 대상기업	월 30만원	월 30만원	대규모기업	월 10만원
비고	육아기 근로시간단축	육아휴직								
우선지원 대상기업	월 30만원	월 30만원								
대규모기업	월 10만원	미지급								

※ (공모형 사업)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한 사업

-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 접수마감일 익월 1개월내 심사위원회를 개최·심사하고, 승인 여부를 5일 이내 신청사업주에게 통지
- 공모사업은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

사업주를 위한 '고용 장려금' 제도 (2019)



3. 고용유지 지원

유형	지원 내용
(사업주)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, 신고 (1개월 단위, 휴업, 휴직)	•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의 20/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<지원수준> ▶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2/3(대규모기업1/2) 지원, 1일 한도 6.6만원
↓	
(사업주) 고용유지 조치 실시	
↓	
(사업주) 월 단위 지원금 신청 * 임금, 휴업수당 등 지급 후 신청	•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<지원수준> ▶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2/3(대규모기업1/2) 지원, 1일 한도 6.6만원
↓	
(고용센터)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	『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』가 실시 이전에 『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』를 한 후 휴업, 휴직을 실시 1.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) ① 기준달(고용유지조치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)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%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②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(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,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)에 비하여 15%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③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(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,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)에 비하여 15%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④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⑤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·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⑥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의 사업주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%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%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⑧ 당해 업종,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2.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신고 ○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제출 3. 계속고용 의무 준수 등 ○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소속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, * 휴업기간중 신규채용의 경우 지원금 미지급

※ 고용유지 지원금(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 → 고용유지조치 실시)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①고용유지 계획에 대한 노사 협의, 월 단위 휴업일정 계획 수립 (*휴업규모: 근로시간 단축률 20% 초과 준수) ②고용유지조치(휴업, 휴직)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실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상세한 내용은 김해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(www.work.go.kr/gimhae)의 『알림마당/공지사항』참고

고용유지(휴업 등) 진행 절차(요약)

